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34,431,071	157,032,932
일반회계	4,511,336,907	135,340,107
특별회계	723,094,164	21,692,825
공기업특별회계	298,479,145	8,954,37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8,479,145	8,954,374
기타특별회계	424,615,019	12,738,451
대학운영특별회계	8,603,350	258,101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23,919	3,718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79,483,744	11,384,512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35,556,311	1,066,68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47,695	25,4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1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15,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575,8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